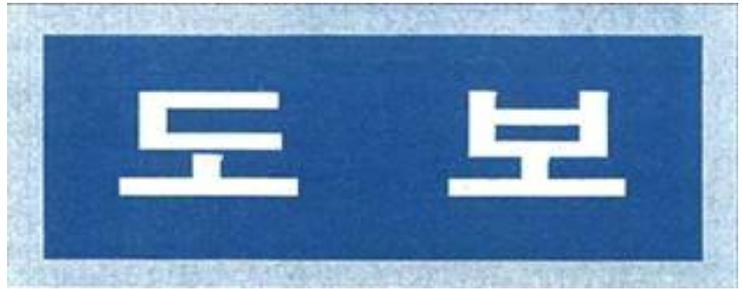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833호 2022. 2. 25.(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2-34호 익산 왕궁물류단지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8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1호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2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28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록 공고 3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291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록공고 3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297호 공인 등록 공고 3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0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3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04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 공고 3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3호 화성천, 수홍천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3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5호 비영리사단법인 변경등록 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9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4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2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4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35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4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4호 공인 등록 공고 4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5호 공인 등록 공고 4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47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2. 21.(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48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2-2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조촌택지) 50
- 군산시 고시 제2022-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51
- 군산시 고시 제2022-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3
- 익산시 공고 제2022-60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승마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55
- 정읍시 공고 제2022-3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56
- 남원시 고시 제2022-18호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64
- 김제시 고시 제2022-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00
- 김제시 고시 제2022-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101

기 타

- 정읍여자중학교 공고 제2022-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02

전라북도 고시 제2022-33호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0-290호(2020.10.12.)에 의거 변경 고시된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이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절차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미이행되어 기 고시된 내용을 취소하고 취소된 내용을 전라북도 고시 제2021-18호(2021.1.15.)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둔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취소 및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 취소내용 : 전라북도 고시 제2020-290호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대둔산도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5.163km²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k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163	-	35.163	100.0	
공원자연보존지구		7.741	-	7.741	22.0	
공원자연환경지구		23.510	증)0.024	23.534	66.9	
공원 마을지구	소 계	3.718	감)0.024	3.694	10.5	
	구. 자연마을지구	3.551	감)0.024	3.527	10.0	
	구. 집단시설지구	0.167	-	0.167	0.5	
공원문화유산지구		0.194	-	0.194	0.6	

4.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5. 공원마을지구(구. 집단시설지구) : 변경 없음

6. 공원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운수시설 계획

(1) 통과도로 계획 : 변경

(단위 : m)

노선번호	구간		도로				비고
	시점	종점	연장			폭원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0,480	감)80	10,400	-	
1	장선	산북	10,480	감)80	10,400	15	

(2) 진입도로 : 변경

(단위 : m)

노선번호	구간				도로				비고
	시점		종점		연장			폭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7,308	증)1,089	8,397	-	
1	완창마을	완창마을	안심주차장	안심주차장	3,000	-	3,000	10	
2	삼거리마을	삼거리마을	주암마을	주암마을	4,000	-	4,000	10	
3	장선마을	국도17호선	국도17호선	장선마을	308	증)1,042	1,350	8	위치변경
4	-	장선마을	-	장선마을	-	증)47	47	6	신설

(3) 탐방로 : 변경

(단위 : m)

노선번호	구간		연장			비고
	시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7,000	감)190	16,810	
1	기동	마천대	2,700	-	2,700	
2	용문골	마천대	1,300	-	1,300	
3	안심전	마천대	3,900	-	3,900	
4	피목동천	안심휴게소	3,400	-	3,400	
5	평촌	천등산	3,800	감)190	3,610	노선축소
6	안심사	금오봉 능선	1,900	-	1,900	

(4) 삭 도 : 변경없음

(5) 주차장 : 변경없음

(6) 현수교 : 변경없음

나. 단독시설계획 : 변경없음

7. 기존시설의 준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면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자연생태과(063-280-4173), 완주군 체육공원과(063-290-274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정정고시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대둔산도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5.163km²
3. 용도지구계획 : 정정

구 분	면 적 (k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정정			
합 계	35.163	-	35.163	100.00		
공원자연보존지구	7.741	-	7.741	22.0		
공원자연환경지구	23.534	감)0.024	23.510	66.9		
공원마을지구	소 계	3.694	증)0.024	3.718	10.5	
	구. 자연마을지구	3.527	증)0.024	3.551	10.0	
	구. 집단시설지구	0.167	-	0.167	0.5	
공원문화유산지구	0.194	-	0.194	0.6		

4. 주요 보호대상 자원 : 정정없음
5. 공원마을지구(구. 집단시설지구) : 정정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 정정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188,762	100.0	
상업시설지	35,047	21.0	
숙박시설지	45,941	27.6	
공공시설지	4,541	0.6	
녹 지	29,103	17.5	
기타시설지	74,130	33.3	

나. 세부시설계획 : 정정없음

(단위 : m²)

구 분	부지면적	동수	건축연면적	비고
총 계	188,761.7	48	131,531.18	
상업시설지	35,047.0	11	63,759.97	
종합온천장	14,072.0	7	40,950.00	
상가	20,975.0	4	22,809.97	
숙박시설지	45,941.0	26	65,146.40	
호텔	16,139.0	2	32,538.30	
여관	29,802.0	24	32,608.10	
공공시설지	4,540.6	2	385.87	
관리사무소	991.0	1	165.87	신설(기존시설반영)
쓰레기 분리수거장	2,493.0	-	-	신설(기존시설반영)
소방서	1,056.6	1	220.00	
녹 지	29,103.0	-	-	
기타시설지	74,130.1	9	2,238.94	
도로	25,975.0	-	-	
탐방지원센터	566.0	1	82.08	신설(기존시설반영)
헬기장	4,664.0	-	-	신설(기존시설반영)
주차장	23,369.0	3	164.65	신설(기존시설반영)
체육시설	2,385.0	-	-	신설(기존시설반영)
잔디광장	4,161.0	-	-	신설(기존시설반영)
화장실1	425.0	1	139.27	신설(기존시설반영)
화장실2	411.0	1	89.04	신설(기존시설반영)
화장실3	338.0	1	63.90	신설(기존시설반영)
오수처리장	6,396.3	1	500.00	
휴게소	2,244.1	1	1,200.00	
배수지	2,946.0	-	-	
온천시설	249.7	-	-	

6.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계획 : 정정

(1) 통과도로 계획 : 정정

노선번호	구간		도로				비고
	시점	종점	연장(m)			폭원	
			기정	증감	정정		
합 계	-	-	10,400	증)80	10,480	-	
1	장선	산북	10,400	증)80	10,480	15	

(2) 진입도로 : 정정

노선번호	구간				도로			비고	
	시점		종점		연장(m)				폭원
	기정	정정	기정	정정	기정	증감	정정		
합계	-		-		8,397	감)1,089	7,308	-	
1	완창마을	완창마을	안심주차장	안심주차장	3,000	-	3,000	10	
2	삼거리마을	삼거리마을	주암마을	주암마을	4,000	-	4,000	10	
3	국도17호선	장선2마을	장선2마을	국도17호선	1,350	감)1,042	308	8	
4	장선2마을		장선2마을		47	감)47			

(3) 탐방로 : 정정

노선번호	구간		연장(m)			비고
	시점	종점	기정	증감	정정	
합 계	-	-	17,810	증)190	18,000	
1	기동	마천대	2,700	-	2,700	
2	용문골	마천대	1,300	-	1,300	
3	안심전	마천대	3,900	-	3,900	
4	피목동천	안심휴게소	3,400	-	3,400	
5	평촌	천등산	3,610	증)190	3,800	
6	안심사	금오봉 능선	1,900	-	1,900	
7	탐방지원센터	허골 능선	1,000	-	1,000	둘레길 신설

(4) 삭 도 : 정정없음

번호	명칭	위치	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비고
합계	1개소		5,205	2,337	
1	상부삭도	운주면 산북리 산 15-15 입	5,205	2,337	

(5) 주차장 : 정정없음

번호	명칭	위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고
합계	1개소		13,929	30.0	
1	안심사주차장	운주면 완창리 산 34-1임	13,929	30.0	703대 (소형680대,대형23대)

(6) 현수교 : 정정없음

번호	명칭	위치	비고
합계	2개소		
1	삼선구름다리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2	금강구름다리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나. 단독시설계획 : 정정

(1) 단독시설 총괄표 : 정정

구분	개소(동)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19	17,691	1,376.42		
공공시설	소 계	3	3,822	430.00	오기 정정
	상수도	2	2,502	325.00	
	배수지	1	600	25.00	
	취수장	1	1,902	300.00	
	하수처리시설	1	1,320	105.00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5	12,869	946.42	
	야영장	2	9,043	200.00	
	휴게소	4	1,450	288.04	
	휴게소1	1	300	59.34	
	휴게소2	1	570	113.30	
	휴게소3	1	350	70.00	
	휴게소4	1	230	45.40	
	전망대	4	254	49.90	
	대피소	2	830	165.00	
	화장실	3	1,292	243.48	
문화시설	전시관(이치전적지)	1	1,000	-	

(2) 단독시설 설치위치 : 정정없음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고
합 계		-	
공공시설	상수도	-	
	배수지	운주면 산북리 산29-11임	
	취수장	운주면 산북리 산29-11임	
	하수처리시설	운주면 고당리 산19-2	
휴 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	-	
	야영장1	운주면 산북리 산29-1임	
	야영장2	운주면 산북리 417-6임(4,943㎡)	
	휴게소	-	
	휴게소1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동 심
	휴게소2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약 수 터
	휴게소3	운주면 완창리 34답	안 심 사
	휴게소4	운주면 산북리 산23-30임	하부삭도
	전망대	-	
	전망대1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마 천 대
	전망대2	운주면 산북리 산60임	천 등 산
	전망대3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약 수 터
	전망대4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동 심
	대피소	-	
	대피소1	운주면 산북리 산15-1임	제1대피소
	대피소2	운주면 산북리 산60임	제2대피소
	화장실	-	
	화장실1	운주면 산북리 산29-11임	
	화장실2	운주면 완창리 27-4임	
	화장실3	운주면 산북리 611-17잡	
문화시설	전시관(이치전적지)	운주면 산북리 산12-1임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정정 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연월일 : 2022년 2월 25일

9. 공원계획 변경도면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 총괄도 : 축척 1:25,000 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 위치 : 축척 1:5,000 도면

○ 공원마을지구(구.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5,000 도면

10. 기타 : 관계도서를 전라북도 자연생태과(280-4173), 완주군 체육공원과
(290-2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2 - 34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1-380(2021.12.17.)호로 고시된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물류단지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물류단지 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물류단지의 명칭	위 치	면 적(㎡)			최 초 지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익산왕궁물류단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805번지 일원	434,085	증) 13,519	447,604	2018.3.9.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 등의 열람장소

- 전라북도 공향하천과(063-280-3434)
- 익산시 교통행정과(063-859-5694)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1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강당, 회의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관의 대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관의 범위(안 제4조)

-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대관 가능

나. 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5조)

- 1) 시설 사용허가, 변경, 특별한 시설물 설치 시 농업기술원장에게 사용신청
- 2)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경합 시 신청순으로 허가

다. 시설별 사용료 징수 금액 (안 제9조)

- 기준사용시간(2시간)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기준안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실과 협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2. 25. ~ 3. 17. (20일간)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시설물을 도민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설물”이라 함은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체육시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대관의 범위) 시설물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당, 교육장, 중회의실
- 2.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경기장)
- 3. 그 밖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2. 전라북도 거주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
- 3.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군 및 농업인 단체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허가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료) ①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기준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기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기술원의 재정·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8조제5호에 의한 경우: 전액 반환
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를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

제12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물의 부착)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재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제9조 관련)

○ 기본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 (원)	비 고
강 당	2시간	180명	30,000	1. 1회 30분내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20%를, 30~60분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50%를, 1시간이상 초과시는 기본사용료의 100%를 추가함 2. 토·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에 30%를 가산함. 3. 연습,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시에도 기준 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육장	2시간	178명	30,000	
중회의실	2시간	40명	20,000	
테니스장	2시간/2면	38×40m	10,000	
풋살경기장	2시간/1면	24×37m	15,000	
야외공연장	2시간	100명	무료	

○ 냉난방 사용료

시 설 명	단위	사용료(원)	비 고
강당, 교육장	1회	30,000	·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기준 사용시간(2시간) 초과시 매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5% 가산함 · 근무시간(9:00~18:00)외 가동시는 100%를 가산함
중회의실	1회	15,000	

【별표 2】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청사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제8조제5호)	사용료 전액 반환
2. 기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10일 ~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붙임

규제영향 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2. 구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원 장 : 지도직고위공무원 박동구 과 장 : (공석) 담 당 : 지방행정사무관 유희상 작성자 : 지방공업주사보 권익준					
4. 근거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			관 련 규제수	5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피 규제자 : 농업기술원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					
6. 규제 존속기한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설 규제내용 ○ 시설물 사용을 위한 신청 및 허가 기준 제시(안 제5조) -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및 2인이상 경합시 처리방법을 규정 ○ 시설물 사용 제한 기준 제시(안 제6조) -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해 사용 제한사유를 규정함 ○ 시설물 입장금지 및 행위 제한 기준 제시(안 제7조) -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해 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사유를 규정함 ○ 시설물 사용의 허가 취소 기준 제시(안 제8조) -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함 ○ 시설물 사용에 따른 변상 기준 제시(안 제16조) - 공공시설물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변상 기준을 규정함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농업기술원의 회의실, 교육장 등은 공공시설물로서 대한 민·관의 대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시설물 사용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정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한 규제임

나. 문제발생의 원인

- 농업기술원은 익산에 위치하여 철도교통이 편리하고 200여명 정도 사용이 가능한 교육장, 강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관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관리규정 및 사용료 징수 근거가 부족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결과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시설물의 활용을 제고 및 객관적·합리적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규제 신설이 필요함
- 공공시설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해 사용의 제한, 입장금지 및 허가취소 사항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변상책임 등의 규제가 필요함

라. 규제의 목표설정

- 공공시설물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기타 사회적 제약 요소

- 반대 의견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본 규제는 기술수준과는 관계가 없으며, 상위 법령의 규정과 비슷한 도 조례(「전라북

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 규제로 대체가 불가함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와의 중복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공시설물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취소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한 도 공유재산 활용기회 제공
-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방지를 통한 공공의 편익 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으며,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고 및 사용료 징수로 도민 전체 편익 발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시장경쟁 제한요소 : 경쟁제한 요인 없음.
- 기업 활동 저해요소 : 기업 활동에 저해요소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 용이성

-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음.

나. 규제 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존속기한의 타당성

-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 · 인력 · 예산 등이 소요되지 않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적정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제정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전라북도청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권익준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2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기한 3년 연장
 -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1) 자동이체 등 송달 및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및 제9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법무행정과(규제심사)
-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 마. 입법예고 : 2022. 2. 25. ~ 3. 16.(20일간)
- 바. 기타사항 : 사전절차 이행 관련
 - 1) 지방세심의위원회 3월 14일 심의 예정: 안 제2조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연장 관련 심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관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063-280-2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① 시각장애인 감면(조례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2.1.28. 법률제18358호, 2021.7.27.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2.1.28. 법률제32370호, 2021.1.25.타법개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

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시행 2022.1.28. 법률제18333호, 2021.7.27.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에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12.4.,보건복지부령 제800호, 2021.7.27.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제2조 관련)</p> <p>3. 시각장애인</p>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p> <p>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p>
--

㉔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조례안 제1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2.1.28. 법률제18358호, 2021.7.27.타법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붙임 2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제2조(시각장애인 감면) 10백만원(2021년 기준)
 - 제15조(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28백만원(2022년 기준)

- 3. 작성자
전라북도 세정과 세무7급 박대화

전라북도 공고 제2022-28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록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단
2. 대표자 : 윤탁(1995. 10. 9.)
3. 주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4. 주된사업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치유식품 브랜드 개발 및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 W푸드테라피센터 운영 등
5. 등록연월일 : 2022. 2. 16.

전라북도 공고 제2022-291호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록공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5.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5-24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군산을사랑하는시민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경암2길 15(1층)
4. 변경등록 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대표자	조병록	정수근
이사	정수근, 강종문, 김광남, 김동권, 오귀례, 성강모, 조장행	김광남(상임이사), 오귀례, 성강모, 김동권, 신경현, 신석문, 조임환

5. 주된 사업

- 새만금사업
- 군산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및 범시민적 역량결집을 위한 활동
- 전북지역 국책사업의 정책개발·홍보·지도 및 감시활동
- 국책사업의 제반 환경 관련 조사연구 자문 및 지원활동과 그에 따른 위탁사업
- 국책사업 관련 국내·국외 교류협력 및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6. 최초등록일 : 2005. 4. 30.

전라북도 공고 제2022-29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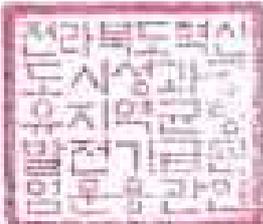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등록 사유 : 기금 운용
- 2. 공인의 개시일 : 2022년 2월 18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혁신성장정책과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분임운용관인</p> </div> <div style="flex: 1; text-align: center;">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전라북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출납원인</p> </div> <div style="flex: 1; text-align: center;">  </div> </div>

전라북도 공고 제2022-30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단체의 명칭 :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조두호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82번지
4. 주된 사업
 - 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② 분기별 정기연주회 및 기획 연주회 추진 사업
 - ③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 ④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⑤ 다문화 및 취약계층 문화예술 정서 치유 지원 사업
 - ⑥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
 - ⑦ 전라북도 및 완주군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다양한 행사 참여 사업
 - ⑧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및 민간보조 공익활동 사업
5. 변경 사항 : 소재지 변경
6. 변경등록연월일 : 2022. 2. 18.

전라북도 공고 제2022-304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등록 연월일 : 2022. 2. 22.
2. 등록번호 및 업종 : 제06-14-0005호 (문화재감리업)
3. 상호·명칭 및 성명 : (유)성연(조주연)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09-14, 수별당 301호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3호

화성천, 수흥천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화성천, 수흥천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계획의 개요

- 사업명 : 화성천, 수흥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규 모 : 지방하천 2개소, 계획 연장 L=6.41km

하 천 명	하천구역 지정(변경) 구간		연장 (km)	시행기관
	시 점	종 점		
화 성 천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산59-1번지선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1674-33번지선 용담댐 합류점	2.16	전라북도
수 흥 천	남원시 대강면 수흥리 566-4번지선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708-7번지선 섬진강(국가) 합류점	4.25	"

- 공람내용 :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지정 관련 지형도면 및 관련 도서

2. 공람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 공람기간 : 2022년 2월 25일 ~ 2022년 3월 10일까지 (공람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전라북도 공항하천과(063-280-3638), 진안군 안전재난과(063-430-2575), 남원시 건설과(063-620-6543), 순창군 안전재난과(063-650-1874) 및 하천소재 읍·면사무소(진안군 안천면, 남원시 대강면, 순창군 적성면)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의견청취 기간 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공항하천과(☎ 063-280-3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4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46호	효성중전기 주식회사 대표 김용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29(상림동)	2022.2.15.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5호

비영리 사단법인 변경등록 공고

「민법」 제4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허가번호 : 제2015-9호(2015. 2. 16.)
2. 법인명 : 사단법인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3. 사무소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267-1
4. 변경허가일 : 2022. 2. 25.
5. 정관변경 주요내용(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기존) 이사 7인 → (개정) 이사 5인
 - 제15조(임원선출)
 - (기존) 임실군 2 · 순창군 · 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
 - (개정) 순창군 · 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
6. 주요사업
 - 공선출하회에 속해있는 농가의 농작업 일자리 제공 및 알선사업
 - 취약계층의 농작업 일자리 제공 및 알선사업
 - 농작업 출퇴근 운송 및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농작업안전용품 지원사업
 - 회원의 농작업 교육 및 생활개선,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고령·영세인등의 농기계작업 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장 : 1인 2. 이 사 : <u>7인</u> 3. 감 사 : 2인</p> <p>제15조(임원의 선출) ①~② (생략)</p> <p>③ 임원은 출자회원 임원과 당연직 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하는 자는 총회의 선임 없이 그 재임기간 중 당연히 임원(이하 “당연직 임원”라 한다)이 된다.</p> <p>1. <u>임실군 2·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u> 2. 임실군·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 중 1명을 당연직으로 총회에서 선임한 자.</p> <p>④ (생 략)</p>	<p>제14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 -----.</p> <p>1. ----- 2. 이 사 : <u>5인</u> 3. -----</p> <p>제15조(임원의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u>순창군·남원시 본 업무 담당과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전라북도 공고 제2022-319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5.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30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전라북도지부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147-11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신 혜 경
 - 생 년 월 일 : 1961. 9. 3.
 - 주 소 : 전북 익산시 서동로 2길 48
5. 주된 사업
 - 여성발전사업, 소비자보호사업
 - 환경보호사업 및 이웃사랑 실천사업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임 양 순	신 혜 경	

7. 허가(변경)일자 : 2022. 2. 22.

전라북도 공고 제2022-32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5.
전라북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2-1-전라북도-7호
- 2. 단체명칭 :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 172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 남 숙
 - 생 년 월 일 : 1957. 5. 26.
 - 주 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70
- 5. 주된 사업
 -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정 일 윤	한 남 숙	

- 7. 허가(변경)일자 : 2022. 2. 22.

전라북도 공고 제2022-335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전라북도수영연맹스포츠클럽
2. 대표자 : 오화섭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덕진구 백제대로 752, 03호(인후동2가, 모닝타워)
4. 주된 사업
 - 수영을 널리 보급하여 개인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향상
 -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수영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생활체육 수영대회 개최 등으로 수영스포츠의 발전과 저변확대
 -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함과 아울러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5. 허가연월일 : 2022. 2. 22.
6. 허가구분 : “신규”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4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등록 사유 : 기금 운용
- 2. 공인의 개시일 : 2022년 2월 25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사회적경제과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금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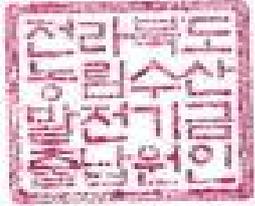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공인의 등록

- 1. 공인등록 사유 : 기금 운용
- 2. 공인의 개시일 : 2022년 2월 25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 록 공 인	
공 인 명	인 영
농산유통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출납원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전라북도 공고 제2022-34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2월 25일

1. 단체명칭 :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

2. 변경등록 내용

변경사항	당초	변경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71, 1층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9

3. 주된 사업

- 재난안전 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 재난대비 생활시설 예찰 및 예방 활동
- 재난재해 복구 지원 및 재난전문훈련 활동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2. 21.(월)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11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발표(2.14.)</p> <p>○ 가족돌봄청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단체 등과 협업하여 도내 가족돌봄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제도와 연계 지원 및 시범사업 발굴, 정책건의 등 우리 도의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 장애·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 = '영 케어러'(Young Carer)</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사회복지과 / 협조 : 관련 실·국)</p>
2022-12	전주형,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 후속조치 철저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 '전주형,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 체결'(1.27.)</p> <p>○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정(21.2.25.)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전주·익산도 정부의 '상생일자리'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해당 시, 참여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고,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국가예산 확보 등 협약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 협조 :)</p>
2022-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강화 및 지원방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18.)</p> <p>○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주된 사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산업 현황 등 진단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도의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p> <p>○ 지역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상용차 산업(현대차, 완주) 등을 포함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을 검토하고, 4월 4일 만료되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또는 미 연장 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혁신성장정책과 / 협조 : 관련 실·국)</p>
2022-14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1.24.)</p> <p>○ 기존 하천관리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1.1.)되면서 환경부는 수량·수질·하천관리 등 물관리 일원화 체계를 완비하고, 물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므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변화에 맞춰 우리 도의 물관리 기능 및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 지난 '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홍수피해 관련보상을 위한 1차 조정금은 예비비 승인 즉시, 피해주민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 후에 집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물환경관리과, 공항하천과 / 협조 : 정책기획관)</p>
2022-15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기능 조정 검토	<p>○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기능 조정 검토</p> <p>-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 사회복지 위·수탁 시설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예시 : 복지 119 봉사대)으로 기능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사회복지과 / 협조 :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코로나19 대응 철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확진자 급증 속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방안' 시행(2.19.~3.13.)</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일부완화 조정방안의 주요 변동사항을 도민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여 홍보(시설별 QR코드 유지 여부 등)하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방역체계·정책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심리적 방역이완이 되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역시 적극 추진하기 바람. <p>※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기존) 21:00 → (변경) 22:00 출입자 명부(QR·안심콜·수기명부) 작성 : (기존) 의무화 → (변경)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이 필요한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의 QR은 유지 (주관 : 사회재난과 / 협조 : 안전정책관)</p>
	당면·현안업무	<p>○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대비 만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총력 지원' 발표(2.15.)</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개정(2.16.)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선거 당일 18:00부터 19:30까지 투표 가능하므로 안전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 공무원의 선거 홍보 금지, 각종 행사 개최 시 사례별로 사전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등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로 공직선거법 위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p>(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전 실·국)</p>

군산시 고시 제2022-28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조촌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

조촌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 2. 25.
 군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	조촌택지개발 사업지구	군산시 조촌동 75-7번지 일원	183,164.1	감) 1,055.5	182,108.6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7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909번지 일원	8,788.7	증) 0.5	8,789.2	진북고7 ('94.1.11)	위치 이동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31	31BL	1,511.7	909-1잡	1,511.7	금회 신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31	31BL	용 도	업무시설	금회 신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30호

군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지곡동 일원 기반시설계획 등 계획적 개발방향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군 산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전북 군산시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 면 적 : 496,650m²

2. 제한사유

- 군산시 지곡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기반시설계획 등 수립시 해제)

4. 공람장소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2, Fax. 063-452-8171)

5.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2021.12.27.)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 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안수용, 조건부수용으로 결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7. 기타

-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이음(www.eum.go.kr) 또는 군산시청(www.gunsa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로: 대로2-2, 소로2-217, 소로3-218호선)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2	30	보조 간선도로	1,746	경암동 대2-4	대1-21	일반 도로	4토지 구획	건고525 ('67.7.25)	
변경	대로	2	2	30~31	보조 간선도로	1,746	경암동 대2-4	대1-21	일반 도로	4토지 구획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217	8	국지 도로	160	경장동513-1 대로1-3	경장동503-12 대로2-2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변경	소로	2	217	8~11	국지 도로	160	경장동513-1 대로1-3	경장동503-12 대로2-2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578	경장동513-5 대로2-2	경장동491-1 대로3-6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변경	소로	3	218	6~7	국지 도로	578	경장동513-5 대로2-2	경장동491-1 대로3-6	일반 도로		건고66 ('74.6.12)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대로 2-2	대로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L=50m) 폭원확장 및 선형개선 - B=30m → 30m~31m(증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2-217	소로 2-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L=48m) 폭원확장 - B=8m → 8m~11m(증 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소로 3-218	소로 3-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L=47m) 폭원확장 - B=6m → 6m~7m(증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암동 주상복합용지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고 제2022 - 600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승마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승마장)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2월 25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승마장)사업

나. 명 칭 : 익산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

2. 사업의 규모

사업의 종류	시 설 명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 시행지	비 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승마장)사업	체육시설/승마장	◦ A= 39,061.1㎡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익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5. 관련도서 : 실음생략.

정읍시 공고 제2022-3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정읍시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읍 시 장
2022년 2월 25일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년 5월 ~ 2023년 12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도로구역) 위치	사업내용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로사업 / 내장산 리조트 연결 도로 조성사업	전북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쌍암동	○연장 : 1.41km ○폭원 : 20.0m ○면적 : 49,218.1㎡	정읍시장/ 정읍시 충정로 234 (수성동 44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 업 명	열 램 장 소	열 램 기 간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정읍시 상교동주민센터, 내장상동 주민센터	2022. 2. 25. ~ 2022. 3. 11. (15일간)

※ 사업구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2. 25. ~ 2022. 3. 11.(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063-539-5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 편입토지 총괄표

구분	계		구성비 (%)	공유지						사유지	
				소계		전라북도		정읍시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합계	49,218.1	130	100	31,151.5	80	87.0	4	28,788.5	72	5,783.6	23
전	968.0	5	2.0	265	2			265	2	703	3
답	4,768.0	8	9.7	3,190	5			3,190	5	495	2
임	10,920.0	18	22.19	7,585	11			5,309	7	2,166	5
대	70.1	2	0.1							70.1	2
도	26,217.0	58	53.3	18,747	39	42	1	18,705	38	554	4
구	4,010.0	20	8.1	281	9	10	1	271	8	614	2
천	159.0	4	0.3	159	4	35	2	124	2		
유	1,215.0	8	2.5	393	6			393	6	822	2
목	6.0	1	0.01							6	1
공원	885.0	6	1.8	531.5	4			531.5	4	353.5	2

구분	국유지											
	소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합계	12,283.0	27	976.0	1	2,038.0	9	5,344.0	6	3,732.0	10	193.0	1
전												
답	1,083.0	1					1,083	1				
임	1,169.0	2	976	1							193	1
대												
도	6,916.0	15			2,038	9	4,261	5	617	1		
구	3,115.0	9							3,115	9		
천												
유												
목												
공원												

○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1	신정동	1484	도	253.5	8	공	정읍시					
2	신정동	1485	도	2,327.8	1,914	공	정읍시					
3	신정동	594-4	유	57	16	공	정읍시					
4	신정동	594-3	도	114	42	공	전라북도					
5	신정동	1314-19	구	174	174	국	농림 축산 식품부					
6	신정동	923-8	천	30	30	공	전라북도					
7	신정동	923-3	구	10	10	공	전라북도					
8	신정동	923-4	천	5	5	공	전라북도					
9	신정동	1314-20	구	30	30	국	농림 축산 식품부					
10	신정동	1314-14	구	130	130	국	농림 축산 식품부					
11	신정동	1488	공	34.1	34.1	공	정읍시					
12	신정동	1314-21	구	197	197	국	농림 축산 식품부					
13	신정동	575-2	도	330	330	국	국토 교통부					
14	신정동	1314-16	구	61	61	국	농림 축산 식품부					
15	신정동	1328-35	도	190	190	국	국토 교통부					
16	신정동	577-7	유	163	163	공	정읍시					
17	신정동	577-5	유	584	584	내쇼날 씨엔디 주식회사						
18	신정동	1465	도	107.4	1	공	정읍시					
19	신정동	577-6	구	174	174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20	신정동	577-4	구	9	9	공	정읍시					
21	신정동	1456-6	대	0.1	0.1	손창욱	전라북도 정읍시 용산동 360-5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1-9	건물 및 공작물 수목의 소유 토지전부 위 설정등기 일로부터 만30년으 로 한다	
22	신정동	1458-1	공	50.8	50.8	공	정읍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23	신정동	578-5	구	24	24	공	정읍시					
24	신정동	578-6	천	107	107	공	정읍시					
25	신정동	579-7	구	39	39	공	정읍시					
26	신정동	591-11	천	17	17	공	정읍시					
27	신정동	591-12	전	156	156	공	정읍시					
28	신정동	1379-1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29	신정동	579-8	도	352	352	공	정읍시					
30	신정동	579-9	구	440	440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31	신정동	1315-3	도	635	635	국	국토교통부					
32	신정동	544-6	도	34	34	공	정읍시					
33	신정동	545-9	도	438	438	공	정읍시					
34	신정동	545-8	구	41	41	공	정읍시					
35	신정동	546-3	도	142	142	공	정읍시					
36	신정동	546-11	구	15	15	공	정읍시					
37	신정동	548-7	구	7	7	공	정읍시					
38	신정동	548-6	임	725	725	공	정읍시					
39	신정동	1315-6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40	신정동	신155-31	도	950	950	공	정읍시					
41	신정동	신155-33	도	241	241	공	정읍시					
42	신정동	신155-29	도	68	68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43	신정동	신155-36	도	1	1	공	정읍시					
44	신정동	신155-37	도	20	20	공	정읍시					
45	신정동	신155-39	도	5	5	공	정읍시					
46	신정동	신155-40	도	24	24	공	정읍시					
47	신정동	신155-25	도	18	18	공	정읍시					
48	신정동	신155-17	도	230	230	공	정읍시					
49	신정동	신155-12	도	122	122	공	정읍시					
50	신정동	신155-38	도	86	86	공	정읍시					
51	신정동	신158-9	유	20	20	공	정읍시					
52	신정동	신158-10	도	48	48	공	정읍시					
53	신정동	신158-15	유	15	15	공	정읍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54	신정동	산158-19	도	63	63	공	정읍시					
55	신정동	산158-24	유	69	69	공	정읍시					
56	신정동	산158-17	도	58	58	공	정읍시					
57	신정동	산158-22	도	146	146	공	정읍시					
58	신정동	산158-25	도	325	325	공	정읍시					
59	신정동	산158-23	유	110	110	공	정읍시					
60	신정동	산158-4	도	99	99	공	정읍시					
61	신정동	산158-21	유	238	238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62	신정동	533-22	답	155	155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63	신정동	1565-1	공	306.7	306.7	한국 관광 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반곡동, 한국관광공사)					
64	신정동	1617	도	13,261.5	1,212	공	정읍시					
65	신정동	1518	도	28,733.9	4,364	공	정읍시					
66	신정동	1517-1	공	443.1	443.1	공	정읍시					
67	신정동	1528	도	11,281.8	2,853	공	정읍시					
68	신정동	575-3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69	신정동	1517-2	공	3.5	3.5	공	정읍시					
70	신정동	1318-14	구	1,399	1,399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신정동	579-3	전	109	109	공	정읍시					
72	신정동	산157-7	도	319	319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73	신정동	산157-8	임	390	390	안장남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8 후곡마을 501-1302					
74	신정동	산157-5	도	158	158	공	정읍시					
75	신정동	산157-6	도	19	19	공	정읍시					
76	신정동	545-4	도	50	50	공	정읍시					
77	신정동	550-1	도	79	79	공	정읍시					
78	신정동	546-1	구	33	33	공	정읍시					
79	신정동	550-2	도	10	10	공	정읍시					
80	신정동	산156-10	도	129	129	안장근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505					

연번	소재지 동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81	신정동	산156-8	도	286	286	공	정읍시					
82	신정동	산156-9	임	420	420	정읍시		1/2				
						유방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2-14	1/2				
83	신정동	549-6	답	814	814	공	정읍시					
84	신정동	549-7	답	2,017	2,017	공	정읍시					
85	신정동	산155-32	임	172	172	공	정읍시					
86	신정동	549-9	답	15	15	공	정읍시					
87	신정동	산155-28	도	38	38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88	신정동	531-12	임	235	235	공	정읍시					
89	신정동	산155-30	도	2,567	2,567	공	정읍시					
90	신정동	산155-35	임	5	5	공	정읍시					
91	신정동	산155-34	임	364	364	박지현	전라북도 정읍시 천변로 172 (연지동)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1-9	근저당권 채권최고 금130,000, 00원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1-9	건물 및 공작물 수목의 소유 토지전부 2007년 7월 31일부터 만30년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341-9 (중앙지점)	근저당권 채권최고 금26,000,0 0원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명덕로25(연지 동) (중앙지점)	근저당권 채권최고 금52,000,0 0원		
								정읍농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정읍시 명덕로25(연지 동) (중앙지점)	근저당권 채권최고 금24,000,0 0원		
92	신정동	산155-11	도	12	12	공	정읍시					
93	신정동	533-23	임	16	16	공	정읍시					
94	신정동	533-24	대	70	70	김송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533-7					
95	신정동	533-9	임	844	27	공	정읍시					
96	신정동	산158-8	도	1,102	1,102	공	정읍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97	신정동	산158-14	도	22	22	공	정읍시					
98	신정동	산158-11	구	103	103	공	정읍시					
99	신정동	산158-16	도	265	265	공	정읍시					
100	신정동	산158-12	도	381	381	공	정읍시					
101	신정동	산159-10	목	6	6	손주양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3 5층					
102	신정동	1566-1	공	468	468	한국 관광 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반곡동, 한국 관광공사)					
103	용산동	6-4	답	340	340	한국 관광 공사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					
104	용산동	산25-5	임	849	849	공	정읍시					
105	용산동	5-1	답	6	6	공	정읍시					
106	용산동	산23-9	임	478	478	공	정읍시					
107	용산동	산23-10	도	3,656	3,656	국	환경부 263					
108	용산동	산23-12	임	1,368	1,368	진양하씨 휘시옥 공이십 이세조 종중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112					
109	쌍암동	산199-4	임	4,129	4,129	공	정읍시					
110	쌍암동	942-1	전	188	188	이영준	죽림리	미등기				
111	쌍암동	941	전	192	192	김순일	정읍군 내장면 쌍암리 878					
112	쌍암동	1088-1	도	349	349	국	국토 교통부					
113	쌍암동	944-3	도	47	47	국	환경부					
114	쌍암동	944-5	답	1,083	1,083	국	환경부					
115	쌍암동	945	전	323	323	노경팔	정읍군 내장면 쌍암리 919					
116	쌍암동	944-4	도	110	110	국	환경부					
117	쌍암동	산192-3	도	6	6	국	환경부					
118	쌍암동	946-6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119	쌍암동	1070-17	도	617	617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쌍암동	946-7	도	72	72	국	국토 교통부					

연번	소재지 동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121	쌍암동	산91-1	임	10	10	임금순	정주시 시기동 507-10					
122	쌍암동	946-4	임	193	193	국	산림청					
123	쌍암동	946-3	도	334	334	국	국토 교통부					
124	쌍암동	산91-2	임	34	34	임금순	정주시 시기동 507-10					
125	쌍암동	1070-15	구	1,047	1,047	국	농림 축산식 품부					
126	쌍암동	940-1	임	976	976	국	기획 재정부					
127	쌍암동	939	답	338	338	공	정읍시					
128	쌍암동	1070-4	구	60	60	국	농림 축산 식품부					
129	쌍암동	산200	임	1,307	529	정읍시	3517					
130	쌍암동	939-1	도	442	442	국	환경부					
합계		130필지			49,218.1							

○ 편입지장물조사

연번	소재지 동	지번	물건명	내용	단위	수량	규격	소유권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산정	533-7	우물갈래		m ²	30	일괄	정읍시 산정동 533-7	김송			
			배수로인상		식	10	↑					
			화단		식	10	↑					
			장비		주	10	↑					
			매설		주	10	↑					
		철쭉		주	900	↑						
2	산정	산58-10	마을표사석	용수마을	식	10	식	정읍시 산정마을길33	용수 마을 대표			
3	산정	산57-2	철쭉		주	30	일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108 후곡마을501동 1302호	안창남			
4	산정	138	간판	종합중기	식	10	식		종합중기 (권환오)			
5	산정	138	표사판	잔사마을	식	10	식	정읍시 백향길 54	잔사마을 대표			
6	산정	143	철쭉		주	10	일괄	정읍시 상동 110 한파마트 103동 1304호	박상철			
			주목		주	10	↑					
			감나무		주	20	↑					
			대추		주	10	↑					
		화양목		주	10	↑						
7	산정	143	마을 표사석	산정마을	식	10	식		산정마을 대표			

남원시 고시 제2022-18호

남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1-318호(2021.10.8.)로 개발계획 변경(2차) 수립된 남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2월 25일

1. 사업의 명칭 : 남원구암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미개발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 및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과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한 도시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 96번지 일원
- 면 적 : 171,702.5㎡

4. 사업시행자(변경)

- 사업시행자
 - 지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지정 : 2020년 8월(실시계획 인가일) ~ 2022년 12월 31일 (환지처분공고일)
 - 변경 : 2020년 8월(실시계획 인가일) ~ 2024년 9월 (환지처분공고일)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71,702.5	-	171,702.5	100.0	
주거지역	소 계	143,066.0	감) 488.5	142,577.5	83.0	
	제1종일반주거지역	32,516.0	감) 8,839.0	23,677.0	13.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063.0	증) 17,956.5	85,019.5	49.5	
	준주거지역	43,487.0	감) 9,606.0	33,881.0	19.7	
녹지지역	소 계	28,636.5	증) 488.5	29,125.0	17.0	
	자연녹지지역	28,636.5	증) 488.5	29,125.0	17.0	

2)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남원시 향교동 일 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677.0	180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8,748.5	18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40,152.0	30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125.0	1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3	2,550	36,118.5	5	1,395	22,923.5	8	870	9,888.0	10	285	3,307.0
	변경	19	2,276	35,000.5	4	976	20,011.2	7	1,058	12,196.2	8	242	2,793.1
중로	기정	11	1,373	25,233.5	3	770	16,387.5	2	372	5,860.0	6	231	2,986.0
	변경	10	1,337	25,291.0	3	769	16,799.5	2	372	5,947.6	5	196	2,543.9
소로	기정	12	1,177	10,885.0	2	625	6,536.0	6	498	4,028.0	4	54	321.0
	변경	9	939	9,709.5	1	207	3,211.7	5	686	6,248.6	3	46	249.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2	20		보조 간선 도로	259	대3-5	중로1-13	일반 도로	염배미들 서측	전라북도 고시 제2010-200호 (10.8.13)	-
기정	중로	1	A	21		집산 도로	83	대1-6	중2-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중로	1	B	20~22.3		집산 도로	428	대1-2	중1-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중로	1	B	20.75~23.75		집산 도로	427	대1-2	중1-A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A	17		집산 도로	140	중1-A	중1-13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중로	2	B	15		집산 도로	232	중1-22	어린이공원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중로	2	B	15		집산 도로	232	중1-22	중3-A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A	12		집산 도로	92	중1-B	중2-B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중로	3	A	12		집산 도로	90	중1-B	중2-B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2	중2-B	소1-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중로	3	C	12		국지 도로	22	중2-B	소1-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D	12	국지 도로	20	중1-B	소2-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중로	3	D	12	국지 도로	19	중1-B	소2-A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3	E	12	국지 도로	43	중1-B	소1-B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중로	3	E	12	국지 도로	43	중1-B	소2-G	일반 도로	-	-	-
폐지	중로	3	F	12	국지 도로	32	중1-B	소1-B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소로	1	A	9.5~11.5	국지 도로	207	중3-A	소3-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289	중3-A	소3-B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B	9.5~13.6	국지 도로	418	대1-2	중3-F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2	G	9.5~13.8	국지 도로	255	대1-2	중3-E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280	소1-A	소1-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2	A	8	국지 도로	226	소1-A	소1-A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B	8	국지 도로	71	소1-A	소2-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소로	2	C	8	국지 도로	71	소1-A	소2-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소로	2	D	8	국지 도로	20	중1-B	소3-A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2	D	8	국지 도로	63	소1-A	소2-A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2	E	5~8	국지 도로	50	소3-D	소3-D	일반 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폐지	소로	2	F	8	특수 도로	6	소2-E	제1호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소로	3	A	6	특수 도로	13	중1-22	소1-A	보행자 전용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소로	3	B	6	특수 도로	13	소2-A	중1-B	보행자 전용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3	B	6	특수 도로	12	소2-A	중1-B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C	6	특수 도로	20	중1-B	소2-A	보행자 전용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변경	소로	3	C	6	특수 도로	21	중1-B	소2-A	보행자 전용도로	-	-	-
폐지	소로	3	D	5	특수 도로	8	소2-E	소1-B	보행자 전용도로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1-B	-	• 변경 - 폭원 20~22.3m → 20.75~23.75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변경
중2-B	-	• 변경 - 종점 어린이공원 → 중3-A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중3-A	-	• 변경 - 연장 92m → 90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중3-D	-	• 변경 - 연장 20m → 19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중3-E	-	• 변경 - 종점 소1-B → 소2-G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중3-F	-	• 폐지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소1-A	-	• 변경 - 폭원 9.5~11.5m → 11.5m - 연장 207m → 289m - 종점 소3-A → 소3-B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종점 변경, 폭원 변경, 연장 증가
소1-B	소2-G	• 변경 - 폭원 9.5~13.6m → 9.5m - 연장 418m → 255m - 종점 중3-F → 중3-E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종점 변경, 폭원 변경, 연장 증가
소2-A	-	• 변경 - 연장 280m → 226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감소
소2-D	-	• 변경 - 폭원 9.5~13.6m → 9.5m - 연장 20m → 63m - 기점 중1-B → 소3-A - 종점 소1-A → 소2-A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기·종점 변경, 폭원 변경, 연장 증가
소2-E	-	• 폐지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소2-F	-	• 폐지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소3-B	-	• 변경 - 연장 13m → 12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소3-C	-	• 변경 - 연장 20m → 21m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소3-D	-	• 폐지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899	증) 117	2,016	-	-
폐지	1	주차장	노외주차장	향교동 100번지 일원	714	감) 714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폐지	2	주차장	노외주차장	향교동 80-1번지 일원	578	감) 578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폐지	3	주차장	노외주차장	향교동 69-2번지 일원	607	감) 607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향교동 103번지 일원	-	증) 1,089	1,089		-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향교동 97번지 일원	-	증) 927	927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1	주차장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2	주차장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3	주차장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1	주차장	• 신설 (면적 : 1,089㎡)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2	주차장	• 신설 (면적 : 927㎡)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8,890	-	8,890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향교동 57번지 일원	1,423	-	1,423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향교동 산5-15번지 일원	7,467	-	7,467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7,596	증716	18,312	-	-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향교동 89번지 일원	10,570	감)10,570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저류지 4,870㎡ 중복결정
폐지	2	공원	어린이공원	향교동 66번지 일원	7,026	감)7,026	-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신설	1	공원	문화공원	향교동 89번지 일원	-	증)9,755	9,755	-	저류지 4,870㎡ 중복결정
신설	2	공원	소공원	향교동 73번지 일원	-	증)8,557	8,557	-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2	어린이공원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1	문화공원	• 신설 - 면적 : 9,755㎡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2	소공원	• 신설 - 면적 : 8,557㎡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135	감) 808	327	-	-
변경	1	공공공지	향교동 92번지 일원	36	감) 18	18	남원시고시 제2020-138 호 (20.8.21)	-
변경	2	공공공지	향교동 93-1번지 일원	260	감) 121	139		-
변경	3	공공공지	향교동 94번지 일원	110	증) 32	142		-
변경	4	공공공지	향교동 96번지 일원	212	감) 184	28		-
폐지	5	공공공지	향교동 86-5 일원	54	감) 54	-		-
폐지	6	공공공지	향교동 78번지 일원	112	감) 112	-		-
폐지	7	공공공지	향교동 79-2번지 일원	144	감) 144	-		-
폐지	8	공공공지	향교동 79-2번지 일원	66	감) 66	-		-
폐지	9	공공공지	향교동 86-2번지 일원	141	감) 141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변경 - 면적 : 36㎡ → 18㎡(감 18㎡)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2	공공공지	• 변경 - 면적 : 260㎡ → 139㎡(감 121㎡)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3	공공공지	• 변경 - 면적 : 110㎡ → 142㎡(증 32㎡)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증가
4	공공공지	• 변경 - 면적 : 212㎡ → 28㎡(감 184㎡)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5	공공공지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6	공공공지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7	공공공지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8	공공공지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9	공공공지	• 폐지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19,081	-	19,081	-	-
기정	1	공공청사	법원	향교동 114-1번지 일원	9,548	-	9,548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기정	2	공공청사	검찰청	향교동 114-1번지 일원	9,533	-	9,533	남원시고시 제2020-138호 (20.8.21)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지	향교동 89번지 일원	4,870	-	4,870	남원시고시 제2020-138 호 (20.8.21)	문화공원 내 (4,870㎡) 중복결정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구암지구	향교동 96번지 일원	171,702.5	-	171,702.5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7,063	42개소	17,063	
단1	단1	1,654	1	324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의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330	
			3	330	
			4	330	
			5	340	
단2	단2	2,610	1	325	
			2	331	
			3	331	
			4	318	
			5	318	
			6	331	
			7	331	
			8	325	
단3	단3	1,896	1	317	
			2	317	
			3	314	
			4	314	
			5	317	
			6	317	
단4	단4	2,477	1	315	
			2	322	
			3	322	
			4	301	
			5	258	
			6	322	
			7	322	
			8	315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단5	단5	1,372	1	271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의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277	
			3	277	
			4	277	
			5	270	
단6	단6	606	1	304	
			2	302	
단7	단7	572	1	286	
			2	286	
단8	단8	607	1	303	
			2	304	
단9	단9	769	1	258	
			2	258	
			3	253	
단10	단10	4,500	1	4,500	

○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11,111	35개소	11,111	
단1	단1	1,406	1	352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의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350	
			3	352	
			4	352	
단2	단2	2,496	1	312	
			2	312	
			3	312	
			4	312	
			5	312	
			6	312	
			7	312	
			8	312	
단3	단3	2,432	1	310	
			2	310	
			3	310	
			4	310	
			5	298	
			6	298	
			7	298	
			8	298	
단4	단4	944	1	295	
			2	261	
			3	388	
단5	단5	1,377	1	276	
			2	276	
			3	276	
			4	276	
			5	273	
단6	단6	1,412	1	337	
			2	340	
			3	340	
			4	395	
단7	단7	1,044	1	330	
			2	330	
			3	384	

나) 공공주택용지(변경)

○ 지정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60,480	3개소	60,480	
공1	공1	12,855	1	12,855	임대 (60㎡ 이하)
공2	공2	29,925	2	29,925	일반분양 (60~85㎡ 이하)
공3	공3	17,700	3	17,700	일반분양 (60~85㎡ 이하)

○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67,336	2개소	67,336	
공1	공1	42,790	1	42,790	임대 (60~85㎡ 이하) 일반분양 (60~85㎡ 이하) 일반분양 (85㎡ 초과)
공2	공2	24,546	2	24,546	일반분양 (60~85㎡ 이하)

다) 준주거용지(변경)

○ 지정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9,440	12개소	9,440	
준1	준1	1,283	1	641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의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642	
준2	준2	1,674	1	553	
			2	568	
			3	553	
준3	준3	1,255	1	631	
			2	624	
준4	준4	2,364	1	611	
			2	586	
			3	590	
			4	577	
준5	준5	2,864	1	2,864	

○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5,860	11개소	5,860	
준1	준1	1,328	1	664	인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획지의 분할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664	
준2	준2	1,630	1	544	
			2	543	
			3	543	
준3	준3	1,255	1	631	
			2	624	
준4	준4	1,647	1	438	
			2	397	
			3	397	
			4	415	

라)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19,081	2개소	19,081	
청1	청1	9,548	1	9,548	법원
청2	청2	9,533	1	9,533	검찰청

마) 주차장(변경)

○ 지정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1,899	3개소	1,899	
주1	주1	714	1	714	-
주2	주2	578	1	578	-
주3	주3	607	1	607	-

○ 변경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2,016	2개소	2,016	
주1	주1	1,089	1	1,089	-
주2	주2	927	1	9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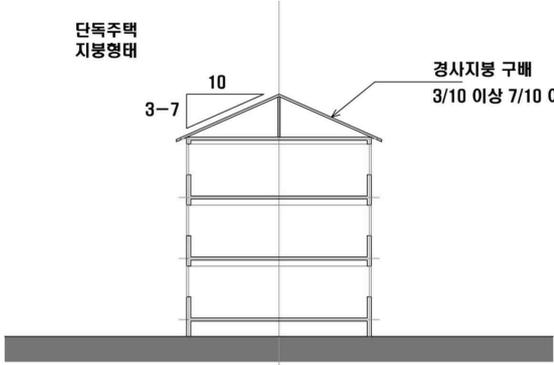
바) 공공기관

○ 신설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²)	
합 계		3,769	1개소	3,769	
공공1	공공1	3,769	1	3,769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단1 ~ 단9	기 정	단1 ~ 단9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바목, 자목 내지 하목 ※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 이하에만 위치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층 이하로 한다.)
				1획지당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가급적 2개 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전면가로의 방향, 조망·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변 경	단1 ~ 단7	변 경	단1 ~ 단7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한 높이 1.2m 이하의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별표5> 옥외광고물에 제시된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단1 ~ 단9	기 정	<p>단1 ~ 단9</p> <p>지붕 및 옥탑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주위 경관에 어울리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건축물을 계획 한 경우 테라스 또는 옥상정원 조성,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평지붕 설치시 옥상층의 건축물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식재나 커버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 옥상층의 건축물 부속시설(옥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경사지붕 설치 예시></p>  <p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 지붕형태</p> <p style="text-align: right;">경사지붕 구배 3/10 이상 7/10 이하</p>
변 경	단1 ~ 단7	변 경	<p>단1 ~ 단7</p> <p>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6> 색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색채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10 (블록형 단독주택)	단10 (블록형 단독주택)	건축물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입주자 전용의 비영리 공동이용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이하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가구 이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10 (블록형 단독주택)	단10 (블록형 단독주택)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 방향은 남향 또는 동향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외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지붕 및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형태는 주위 경관에 어울리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으로 건축물을 계획 한 경우 테라스 또는 옥상정원 조성,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평지붕 설치시 옥상층의 건축물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기의 실외기 등)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식재나 커버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옥상층의 건축물 부속시설(옥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경사지붕 설치 예시></p>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6> 색체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색체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블록내 최대 필지규모	수요가구수	비 고
블록형 단독주택	단10	4,500	660㎡ 이하	13가구 이하	-

■ 변경

- 단10(블록형 단독주택) : 삭제

■ 변경(블록형 단독주택 삭제)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공1 ~ 공3	기 정	공1 ~ 공3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주택법」 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며, 부대복리시설 중 단지내 상가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변 경	공1 ~ 공2	변 경	공1 ~ 공2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직각배치구간에 걸치는 건축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직각배치구간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별도의 소음예측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용도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획지경계선으로부터 주거동은 최소 6m,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은 최소 3m를 이격하여야 한다. 통행축 반영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부대복리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결정도의 부대복리시설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상가의 경우 회전식교차로 부분에는 전면부를 접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공1 ~ 공3	공1 ~ 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상형 아파트 건축시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내가 되도록 한다. • 지붕, 옥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4/10 범위 내에서 조성한다. -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주요 보행동선을 확보하거나 휴식·놀이 혹은 커뮤니티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층부에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2개층 이상 또는 유효높이 4m 이상 필로티로 하여야 한다. - 필로티의 폭은 '주호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 담장,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 보행자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 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식수대를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변경	공1 ~ 공2	공1 ~ 공2	<p style="text-align: center;">형태 및 외관 , 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6> 색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색채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별표5> 옥외광고물에 제시된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 옥외광고물계획'을 따른다.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6장 야간경관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별표2>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규모·수용세대수·평균층수·건폐율·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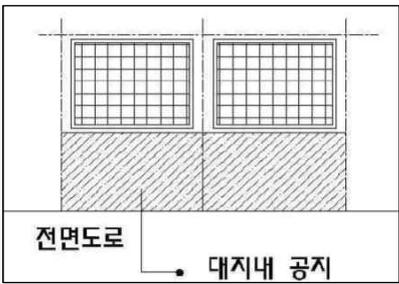
■ 기 정

구 분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가구번호	주택유형								
합 계		60,480	1,051	-	-	-	60% 이하	180% 이하	-
공1	60㎡ 이하	12,855	272	85㎡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임대
소 계		47,625	779	-	-	-	60% 이하	180% 이하	-
공2	60~85㎡ 이하	29,925	489	11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분양
공3		17,700	290	11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분양

■ 변 경

구 분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가구번호	주택유형								
합 계		67,336	1,045	-	-	-	60% 이하	180% 이하	-
공1	60~85㎡ 이하	13,504	221	11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임대
소 계		53,832	824	-	-	-	60% 이하	180% 이하	-
공1	60~85㎡ 이하	12,903	211	11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분양
	85㎡초과	16,383	211	14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분양
공2	60~85㎡ 이하	24,546	402	110㎡ 이하	15층	18층	60% 이하	180% 이하	분양

다.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준1 ~ 준5	기 정	준1 ~ 준5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일반개업 제공업 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 병원, 요양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7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변 경	준1 ~ 준4	변 경	준1 ~ 준4	최고층수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준주거용지 배치 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지상1층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4m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준 1 ~ 준 5	기 정 준 1 ~ 준 5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높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으로 건축시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지붕의 경사는 세로 : 가로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3.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경사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 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6> 색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5장 색채계획'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별표5> 옥외광고물에 제시된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제7장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변 경 준 1 ~ 준 4

라.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청2	청1, 청2	건축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및 검찰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별표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의 규모·수용세대수·평균층수·건폐율·용적률

구 분		공공청사	
건축물 용 도	도면표시	청1	청2
	지정용도	법원 및 그 부대시설	검찰청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가구		청1	청2

마. 주차장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3	주1 ~ 주3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 외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불허용도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주2, 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7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 : 180% 이하 주2 : 300% 이하 주3 : 3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용적률 45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 : 4층 이하 주2 : 5층 이하 주3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2	주1 ~ 주2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외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옥외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 : 180% 이하 주2 : 180% 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용적률 360% 이하
		최고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1 : 4층 이하 주2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바. 공공기관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1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7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0% 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입주기관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통(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단 1 ~ 단 10	단 1 ~ 단 10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을 따른다.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는 획지는 공원,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한다.
			획지 내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획지에는 최소한 1대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남원시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획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변 경	단 1 ~ 단 7	단 1 ~ 단 7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공1 ~ 공3	기 정 공1 ~ 공3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단지 진·출입구 전면도로와의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비상출입구는 비상차량의 경우만 진출입을 허용한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보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도의 교차구간에는 '보행자 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지상주차장을 최소화 한다. (단, 임대주택은 주차대수 기준 20퍼센트 범위내 지상주차장을 허용한다.) 지상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변 경 공1 ~ 공2	변 경 공1 ~ 공2	자전거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지내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라. 준주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준1 ~ 준5	기 정	준1 ~ 준5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을 따른다.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는 획지는 보행자전용도로 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한다.
변 경	준1 ~ 준4	변 경	준1 ~ 준4	획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주거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마.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청2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을 따른다.
				획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배치한다.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바.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주1 ~ 주3	기 정	주1 ~ 주3	주차장의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설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건축물과의 조화와 주·야간 가로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 경	주1 ~ 주2	변 경	주1 ~ 주2		

사. 공공기관용지(신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1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을 따른다.
		획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원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각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별표4>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 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경계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 -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 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공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녹지공간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각각부 등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 개념으로 확보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 조성방식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 규정과 남원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과고라, 벤치, 조명시설,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식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2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의 공간을 말한다. ● 진입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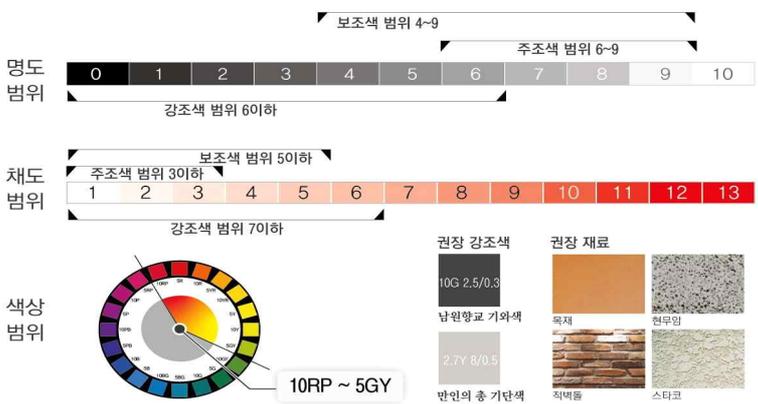
<별표5>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구분		조성기준
공통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구암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채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설치 및 규격, 형태, 수량, 허가 및 신고절차 등은 법, 시조례를 준용한다.
	광고물 등의 추가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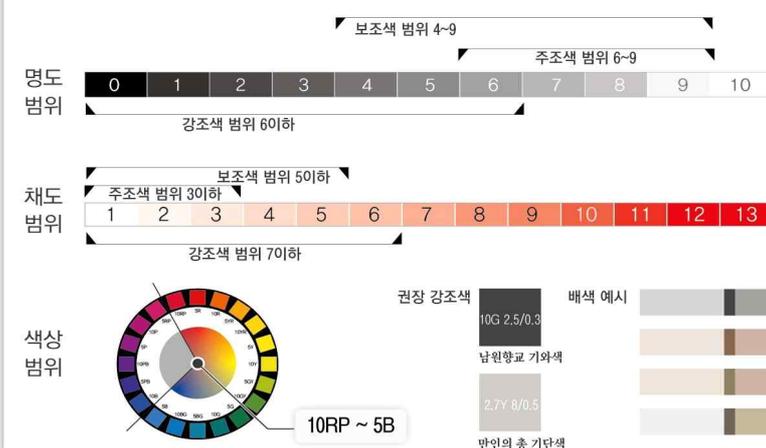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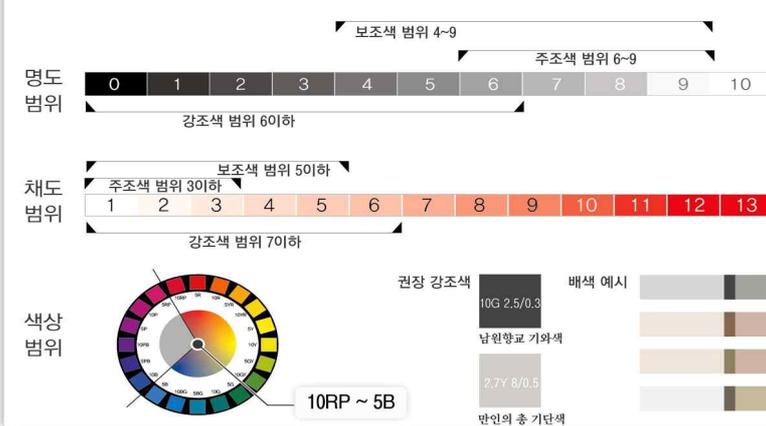
<별표6> 색채계획(변경)

구분		조성기준
공통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의 시가지경관과 배후 자연경관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신규 개발에 따른 인공적이고 이질적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본연의 색을 적극 활용한다. • 시각적 정연화를 위해 동일 건축물 및 대지 내 과도한 색상의 사용은 지양한다. • 주조색은 면적의 70%, 보조색은 면적의 20%, 강조색은 면적의 10% 범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과도한 원색의 사용 및 슈퍼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별표6> 색채계획(계속)

구분	조성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후 자연녹지와외의 시각적 연계를 위해 자연색과 유사한 권역색채 연출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의 색채는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하여 단계적 색채 패턴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수직적 위압감을 고려하여 저층부는 저명도, 고층부는 고명도로 밝아지는 색채를 적용한다. 광치천변의 건축물 측면부는 Canvas의 개념으로 색채 패턴을 적용한다. 건축물 측면·슬라브 등 일부 요소에 한하여 변화감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자연재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구암지구 자연녹지와외의 시각적 연계를 위한 자연색과 유사한 권역색채 연출</p> <p style="text-align: center;">- 환경색채와 유사한 R-Y-G-B계열의 색상을 사용 - 주조/보조/강조색의 비율은 7:2:1로 적용</p>  <p>명도 범위: 0-10 (보조색 범위 5-9, 주조색 범위 7-9, 강조색 범위 6이하)</p> <p>채도 범위: 1-13 (보조색 범위 5이하, 주조색 범위 3이하, 강조색 범위 7이하)</p> <p>색상 범위: 권장 강조색 (3GY 5/4.8), 권장 재료 (배색 예시, 남원 풀빛 자연색, 하늘 담은 광치천색, 1.2PB 7/6)</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돌, 기와 등 지역성이 반영된 건축재료 및 색상 등의 적용을 권장한다. 저채도 색상의 차분한 분위기 연출 및 정연한 색채패턴을 권장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전통성과 맥락을 고려한 색채 및 재료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벽돌, 기와 등 지역성이 반영된 건축재료 및 색상적용 - 저채도의 색상 적용을 통해 차분한 분위기 연출 - 주거단지의 경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건축물 지붕층에 유사색상 통합적용</p>  <p>명도 범위: 0-10 (보조색 범위 4-9, 주조색 범위 6-9, 강조색 범위 6이하)</p> <p>채도 범위: 1-13 (보조색 범위 5이하, 주조색 범위 3이하, 강조색 범위 7이하)</p> <p>색상 범위: 권장 강조색 (10G 2.5/0.3, 2.7Y 8/0.5), 권장 재료 (벽돌, 원무인, 만인의 흥 기단색, 적벽돌, 스타코)</p> </div>

<별표6> 색채계획(계속)

구분	조성기준	
공통	<p>준주거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상, 과도한 패턴은 지양하고 재료를 활용한 심플한 색채연출을 권장한다. •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재료 사용 및 재료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p>건축 조형요소를 강조하는 색채패턴 및 개방감을 연출하는 색채계획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이 느껴지는 지역경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적 패턴 지양 - 건축매스의 조형요소를 강조하는 색채패턴 적용 권장 - 보행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저층부는 투과성 재료 적용 권장 
	<p>기정</p> <p>공공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색상의 사용은 지양하고 최소화된 색채로 건축물의 조형미를 강조한다. • 입면재료의 특성을 활용한 패턴연출을 권장한다. • 향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색의 색채는 지양한다. <p>투명성 있는 입면재료와 저채도 중심의 색채구성으로 열린 색채경관 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입면색채패턴을 지양하고 저채도 중심의 단일 색채 구성 권장 - 심플한 색채 구성 및 포인트 재료 등의 활용을 통한 조형미 강조 
<p>변경</p> <p>공공청사 및 공공기관</p>		

5)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문화공원(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89번지 일원)

○ 총괄조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M2)	규모/수량	건 축 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M2)	
총 계	-	9,755.0	16	2	533.00	100.0%
기반시설	소계	2,313.0	-	-	-	23.7%
	도로	1,513.0	-	-	-	15.5%
	광장	800.0	-	-	-	8.2%
조경시설	-	22.0	-	-	-	0.2%
휴양시설	-	78.0	16	-	-	0.8%
운동시설	-	646.0	-	-	-	6.6%
교양시설	-	164.0	-	-	-	1.7%
편익시설	-	1,029.0	-	1	494.0	10.5%
공원관리시설	-	39.0	-	1	39.0	0.4%
녹지 및 기타	-	5,464.0	-	-	-	56.0%

○ 시설결정조서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규모/수 량	구성비	건축물(M2)		비고
						건축 면적	연면 적	
합 계			9,755.0	16	100.0%	533	533	
기반시설	소계		2,313.0		23.7%			
도로 및 광장		도로	1,513.0		15.5%			
		광장	800.0		8.2%			
	가-1	광장1	508.0					
	가-2	광장2	111.0					
	가-3	광장3	103.0					
	가-4	광장4	78.0					
조경시설	소계		22.0		0.2%			
	나-1	계단1	4.0					
	나-2	계단2	3.0					
	나-3	원형플랜터1	5.0					
	나-4	원형플랜터2	5.0					
	나-5	원형플랜터3	5.0					
휴양시설	소계		78.0	16	0.8%			
	다-1	휴게쉼터1	39.0					
	다-2	휴게쉼터2	39.0					
	A	파고라		4				
	B	평의자		12				
운동시설	소계		646.0		6.6%			
	라-1	멀티코트	646.0					
교양시설	소계		164.0		1.7%			
	마-1	야외스탠드	164.0					
편익시설	소계		1,029.0		10.6%			
	바-1	게이트볼장	494.0			494	494	건폐율 5.1%
	바-2	주차장	535.0					
공원관리시 설	소계		39.0		0.4%			
	사-1	관리사무소	39.0			39	39	건폐율 0.4%
녹지 및 기타	소계		5,464.0		56.0%			
		녹지 및 기타	5,464.0					

○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504.9	1,513.0				
도로	소로	3류	1	2.0	4.5	9.0	진입로	남측부지	소3-2	
	소로	3류	2	4.0	2.8	11.0	진입로	서측부지	소3-2	
	소로	3류	3	3.0	265.0	795.0	연결로	광장1	광장1	
	소로	3류	4	3.0	33.0	99.0	연결로	소3-3	광장2	
	소로	3류	5	3.0	29.0	87.0	연결로	광장2	광장3	
	소로	3류	6	3.0	56.0	168.0	연결로	광장3	소3-7	
	소로	3류	7	3.0	24.3	73.0	연결로	광장3	광장4	
	소로	3류	8	3.0	29.3	88.0	연결로	주차장	광장1	
	소로	3류	9	3.0	27.7	83.0	연결로	소3-10	광장1	
	소로	3류	10	3.0	33.3	100.0	진입로	북측부지	주차장	

나) 소공원(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73번지 일원)

○ 총괄조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M2)	규모/수량	건 축 물		비 고
				동수(동)	건축면적(M2)	
총 계	-	8,557.0	238	-	-	100.0%
기반시설	소계	1,607.0	-	-	-	18.8%
	도로	1,402.0	-	-	-	16.4%
	광장	205.0	222	-	-	2.4%
휴양시설	-	76.0	16	-	-	0.9%
녹지 및 기타	-	6,874.0	-	-	-	80.3%

○ 시설결정조서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 (M2)	규모/수 량	구성비	건축물(M2)		비고
						건축 면적	연면 적	
합 계			8,557.0	238	100.0%			
기반시설		소계	1,607.0	222	18.8%			
도로 및 광장		도로	1,402.0		16.4%			
		광장	205.0		2.4%			
	가-1	광장1	68.0					
	가-2	광장2	60.0					
	가-3	광장3	77.0					
	A	디딤석		222				
휴양시설		소계	76.0	16	0.9%			
	나-1	휴게쉼터1	38.0					
	나-2	휴게쉼터2	38.0					
	B	파고라		4				
	C	평의자		12				
녹지 및 기타		소계	6,874.0		80.3%			
		녹지 및 기타	6,874.0					

○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634.1	1,402.0				
도로	소로	3류	1	1.5	26.7	40.0	연결로	소3-2	소3-5	
	소로	3류	2	2.5	37.2	93.0	연결로	광장1	소3-5	
	소로	3류	3	1.5	88.0	132.0	연결로	소3-2	소3-4	
	소로	3류	4	2.5	169.6	424.0	연결로	광장1	광장2	
	소로	3류	5	2.5	203.6	509.0	연결로	남측부지	광장3	
	소로	3류	6	1.5	28.0	42.0	연결로	소3-4	소3-5	
	소로	3류	7	2.0	60.0	120.0	연결로	광장3	소3-4	
	소로	3류	8	2.0	21.0	42.0	연결로	광장2	소3-7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부더 14일간(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LH 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63-230-6267)

10.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김제시 고시 제2022-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2월 25일

- 1. 사 업 명 : 김제시 옥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성 명 : 유한회사 스타하우스 (대표자 박진호)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40번길 59 (유촌동, 2층)
 -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김제시 옥산동 279-2번지 외 7필지
(275-4, 279-4, 279-5, 279-6, 279-8, 303-1, 303-8)
 - 나. 대지면적 : 8,408㎡
 - 다. 건축면적 : 1,943.5967㎡
 - 라. 연 면 적 : 25,071.7772㎡
 - 마. 규 모 : 168세대 (주3개동/지하1층,최고18층, 부6개동/최고1층)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임대
 - 아. 사업기간 : 2022. 3. ~ 2024. 4.
 -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정다운(☎540-33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고시 제2022-2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김 제 시 장
2022년 2월 25일

1. 사업명 : 김제시 서암 퀸즈포레스트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명 : 주식회사 백인아이월 (대표자 양광식)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191, 201호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김제시 서암동 15번지 외 2필지(15-5, 22-1번지)

나. 대지면적 : 2,974㎡

다. 건축면적 : 638.0887㎡

라. 연면적 : 10,546.7398㎡

마. 규모 : 74세대 (주1개동/지하1층,최고20층)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민간임대

아.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정다운(☎540-33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여자중학교 공고 제2022-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읍여자중학교장
2022년 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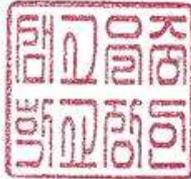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가. 공인등록 및 폐기사유

- 2022. 3.1.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샘고을중학교로 교명 변경

나. 사용개시일: 2022년 3월 1일

2. 등록 및 폐기 내역

신 규 공 인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샘고을중학교장인<명칭변경>		
	공인 인영	
샘고을중학교운영위원장인<명칭변경>		
	공인 인영	
샘고을중학교교회계출납원인<명칭변경>		

샘고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명칭변경>	공인 인영 
샘고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명칭변경>	공인 인영 
폐 기 공 인	
정읍여자중학교장인<폐기>	공인 인영 
정읍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폐기>	공인 인영 
전북교특정읍교육청정읍여자중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폐기>	공인 인영 
정읍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폐기>	공인 인영 
정읍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폐기>	공인 인영 
정읍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폐기>	공인 인영 